

# “공사대장 통보 잊지 마세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수급인)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서브시스템인 건설공사정보시스템(Construction Work Information System)을 통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발주자는 그 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허위통보로 인해 과태료를 무는 건설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도급공사별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토록 제도화돼 있는데 건설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것.

건설업계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동안 건설공사대장 통보위반으로 KISCON에 올라와 있는 과태료 처분은 일반건설업체 457건, 전문건설업체 91건 등 총 54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일반 254건, 전문 165건 등 총 419건의 처분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30.78%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2003년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시행된 이후 해마다 처분 건수가 늘어나 현장의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처분 건수가 연간 1건에 그쳤고, 2004년에는 1분기 동안 79건, 연간으로 356건으로 급증했다.

2005년에는 1분기 동안 85건, 연간 382건의 처분이 있었고 지난해 연간 684건의 처분이 이뤄져 전년 대비 배 가까이 늘어났다.

KISCON 관리기관인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05년까지는 제도의 홍보를 위해 과태료 처분보다는 신고를 권고하거나 주의를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도가 안착된 지난해부터는 권고나 주의 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어 처분 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신고대상을 3억원 이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하다가 지난 2004년부터 1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면서 "신고대상이 확대되는 관계로 홍보 기간이 길었다"고 덧붙였다.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건설업계 전반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과태료로 나가고 있는 것.

더욱이 업체별 규모에 관계없이 대·중·소업체들 모두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액 5위권의 대형업체인 A사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았거나 허위통보한 이유로 총 14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수시로 변하는 현장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현장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은 입찰, 실적신고, 건설공사대장 통보 등의 업무를 할 때 각기 다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다양한 시스템을 이용하다보니 업무혼선으로 인해 신고나 통보를 제때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단지 건설업체들을 제재하기 위해 제도가 양산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통보된 공사정보는

발주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돼 건설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 건설공사대장의비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작성되며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공종, 공사지역, 발주자, 수급인, 도급방법, 계약성질, 입찰방법, 계약방법, 계약년월일,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현황,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등

### 건설공사대장의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설업체는 주된 영업소에 비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자적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시행령 부칙)

통보대상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로서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해당)</li> <li>※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적용</li> </ul>
통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통하여 통보</li> <li>※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74호</li> </ul>
통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기재 변경 사항</li> </ul>
통보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li> <li>·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li> </ul>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관련 과태료 규정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3의2항]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서브시스템인 “건설공사정보시스템(Construction Work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수급인)는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그 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공사대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 서식

## 주요기능

사용자	업무내용
건설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작성 및 통보</li> <li>· 건설공사대장 변경(추가)사항 작성 및 통보</li> <li>·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재통보</li> <li>· 발주자에게 통보했음을 알리는 이메일 자동발송</li> </ul>
발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보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확인완료 처리</li> <li>· 통보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정요청 처리</li> <li>· 건설업체에게 처리결과를 알리는 이메일 자동 발송</li> </ul>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Q&A

### Q 건설공사대장은 무엇인가?

**A** 건설공사대장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행에 의해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개요, 도급계약내용,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현황, 하수급인 현황, 시공참여자 현황 등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되도록 구성돼 있다.

### Q 건설공사대장의 통보주체는?

**A**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공동도급 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작성, 통보해야 한다.

### Q 통보는 언제까지?

**A**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롭게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대장에 예약통보가 적용돼 신규통보 및 변경통보를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하지 않아도 건설업체는 변경(추가)사항을 입력해 변경통보할 수 있다.

### Q 통보대상 공사범위는?

**A**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이며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모두 통보대상이다.

장기계속공사일 경우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면 차수별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차수에 대해 건설공사대장을 작성, 통보해야 한다.

발주자가 외국기관(미8군 등)이라도 국내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사는 통보대상이며 해외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공사는 통보대상이 아니다.

**Q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의 포함여부는?**

**A** 도급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 1억원 이상인 경우 통보대상이다.

도급금액에는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Q 조달청과 계약할 경우 통보대상은?**

**A** 조달청은 공사계약대행기관이므로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실수요기관으로 해야 한다.

실제 발주자는 하부기관(지사나 사업소)이나 상부기관(본사)으로 발주자를 오인해 입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Q 자기공사도 통보해야하는지?**

**A**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도급받은 공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공사는 통보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자기공사를 하는 일반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업체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원도급이 성립되므로 통보대상이 된다.

**Q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도 통보해야 하나?**

**A**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라면 통보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가 아닌 자기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건설업체와 계약하는 협력업체들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기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는 발주자가 되는 것이므로 협력업체와 건설공사 계약은 원도급계약이 되기 때문이다.

**Q 전기공사 등 타법에 의한 공사는?**

**A** 전산법에 의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분화재수리공사 등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이 아니다.

**Q 복합공사 · 턴키공사의 경우는?**

**A** 복합공사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건설공사대장 작성은 곤란하므로 편의를 위해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에 대해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턴키공사는 반드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 건설공사대장을 작성, 통보해야 한다. ☉



**간접흡연자는 얼마나 많은 독약을 들이마시는 걸까?**

미국 연방정부가 보건부 장관의 이름으로 발표한 공식 경고문(Surgeon General's warning)에 따르면, 흡연자의 입을 통과하지 않은 담배연기에는 흡연자가 들이마셨다가 내뿜는 담배연기보다 카드뮴 7.2배, 벤젠 5~10배,

톨루엔 5.6배, 니켈 13~30배 등 발암물질이 최고 50배나 더 들어 있다. 또, 인체에 해로운 암모니아 가스는 73배, 탄산가스 8.1배, 일산화탄소는 5배나 더 포함돼 있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